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67795 판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기윤도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0. 28.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566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제1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1, 7, 8,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 지상에 있는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2.7㎡를 철거하고, 같은 별지 도면 표시 15, 8, 9, 10, 11, 14,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2㎡ 지상에 있는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4.2㎡를 철거하며, 같은 별지 도면 표시 14,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8㎡ 지상에 있는 화장실과 정화조 2.8㎡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합계 9.7㎡를 인도하며, 9,804,120원 및 2020. 5. 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4,120원 및 2020. 5. 9.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9,5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이보람, 판사 구성훈